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차 총무위원회(2013.11.26)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 | | |
|----|---|----|
| 1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 | 1 |
| 2 |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4 |
| 3 |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2 |
| 4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6 |
| 5 |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22 |
| 6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 24 |
| 7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7 |
| 8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31 |
| 9 |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34 |
| 10 | 거창군 수송대민광지 관림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39 |
| 11 |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 | 42 |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안이유

- 가. 현재의 보건소 시설이 노후 되었고 부지가 좁아 주차공간이 12면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증대되고 있어서
- 나.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가운데 공공용지로 이전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4차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현황

가. 취득재산의 개요

| 구분 | 재산 종별 | 재산의 표시 | | | 기준가격 | 취득 시기 | 취 득 사 유 | 재 산 소유자 |
|----|----------|--------------------------|----|-------|-----------|---------------|-------------|----------------------------|
|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 | |
| 계 | | | | | 8,217,345 | | | |
| 취득 | 토지 | 거창읍 송정리 332-3번지 일원(현) | 대지 | 7,060 | 2,776,345 | 2014~ 2015 | 보건소 이전신축 | 거창군, 송정지구 도시개발 조합 |
| | 건물 | " | | 2,827 | 5,441,000 | | | |

나. 송정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용지 지정 : 7,060m²

- (1) 공유지 환지 4,919m² ⇒ 3,443m²(감모율 30% 적용)
- (2) 추가 환지취득 : 3,617m²(393,250원×3,617m² = 1,422,385천원)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제45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가. 현실태

| 구 조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년도 | 주차시설 | 비 고 |
|----------------------|---------------------|---------------------|---------|----------------|-----|
|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2) | 2,023m ² | 1,412m ² | 1997.11 | 12면 (장애인 2) | |

- 보건소 1일 평균 이용자수 : 300 ~ 350여명 정도

나. 이전 신축의 필요성 : 현존 보건소는 건축한지 15년이 소요되어 노후 되었으며, 부지가 협소해서 주차 공간 12면으로는 환자의 출입이 불편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하여 증축 또는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 특히 정신·지체질환자, 소외계층,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치료 전문시설이 없어서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시점에 기존보건소와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보건소 증축을 위한 보건소 옆 대지면적 2,110m²(638평)를 구입하기 위하여 매입비 1,000백만원 확보하였으나 부지매입비(건물 철거비 및 기반조성비 포함)가 2,000백만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 보건소이전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하

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필요함.

다. 그 후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되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보건소 신축 부지를 공용지로 포함.

※ 2013.11월 지구지정신청,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획

바. 따라서 군민의 건강한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의 노후와 주차공간과 사무공간의 협소한 문제를 해소하고, 정신·지체재활치료센터 연계 운영 등의 효과를 판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회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안이유

- 가.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은 복지시설로써 노후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이전 신축이 필요하며 장애인복합 문화관 건립은 장애인의 체계적 운동재활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신축이 필요함.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성격이 유사한 단체를 거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집적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여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현황

| 구분 | 재산종별 | 재산의 표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산소유자 |
|----|------|--------|----|-------|-----------|------|----------------|----------------------|
|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 | |
| 계 | | | | 3,100 | 1,550,000 | | | |
| 취득 | 토지 | 송정택지지구 | 대지 | 600 | 300,000 | 2014 | 보훈회관 건립 |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
| | | “ | 대지 | 1,000 | 500,000 | 2014 | 장애인복합 문화관건립 | |
| | | “ | 대지 | 1,500 | 750,000 | 2014 | 노인회관 건립 | |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제45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가. 현실태

| 구분 | 소재지 | 건물현황 | | | | 비고 |
|----------|------------|------------|------|------|----------------|-------------|
| | | 준공일자 | 대지면적 | 건물면적 | 규모 | |
| 보훈회관 | 거열로 209-1 | 2000.3.25. | 157㎡ | 309㎡ | 지하 1층 지상 3층 | 3개 단체 입주 |
| 장애인복합문화관 | 신축예정 | | | | | |
| 노인회관 | 거열로 246-13 | 1992.10.6. | 619㎡ | 566㎡ | 지상 4층 | |

나. 이전 또는 신축의 필요성

- (1) 보훈회관 : 건물이 오래되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공간이 없고 8개 보훈단체 중에 상이군경회, 상이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회 등 3개 단체만 사용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함.
- (2) 장애인 복합 문화관 : 현재 시설이 없지만 5천여명의 장애인 건강지원과 여가활용을 위해서 다목적 복합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함.

※ 장애인 복합 문화관 활용계획

| 구분 | 주요시설 | 비고 |
|------|------------------------------|----|
| 체육시설 | 종합체육실(강당겸용), 헬스장, 재활실, 샤워장 등 | |
| 문화시설 | 문화공간, 예술공간, 여가활동 동아리방 | |
| 기타시설 |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관리실, 사무실 등 | |

- (3) 노인회관 : 현재 건물은 25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

하기가 힘들고 회의실 등의 장소가 협소하여 각종 행사는 외부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등 불편함이 많을 뿐 아니라 도로 이면에 위치하여 어르신들이 찾아오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이전 신축을 하고자 함.

다. 이에 따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이 필요하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13.11월 지구지정신청, 12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계획임.

라. 검토결과 : 위와 같이 보훈회관과 노인회관은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 신축하고 장애인 복합 문화관은 전체 장애인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고 일반인에게도 시설 개방을 통해 장애 차별의 벽을 없애는데 기여하도록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시설물 건립을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국·도비와 현 건물 매각 등 예산을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함.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치유의 숲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안이유

- 가. 덕유산과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산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함으로써
- 나.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로써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매입코자 201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현황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 산 소유자 |
|----|------|---------------|----|----------|--------|------|------------|-----------|
| |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 | | |
| 계 | | | | 49,515.4 | 38,690 | | | 5명 |
| 취득 | 토지 | 가조면 수월리 산15 | 임 | 28,329 | 9,349 | 2014 | 치유의 숲 조성사업 | 표주숙 |
| | | 가조면 수월리 산15-1 | 임 | 198 | 78 | | | 최경호 |
| | | 가조면 수월리 산15-2 | 임 | 1,965 | 778 | | | 최경호 |
| | | 가조면 수월리 산15-3 | 임 | 2,584 | 876 | | | 김혜자 |
| | | 가조면 수월리 산15-4 | 임 | 708 | 233 | | | 최경호 |
| | | 가조면 수월리 산16 | 임 | 15,000 | 2,325 | | | 용당소하부락마을회 |
| | | 가조면 수월리 산25 | 임 | 595 | 181 | | | 차정수 |
| | 건물 | 가조면 수월리 산19 | 임 | 136.4 | 24,870 | | | 오숙희 |

4**관련법규와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5**검토의견**

- 가. 치유의 숲 : 50ha 이상의 면적에 치유센터, 치유숲길, 산림작업 체험장을 필수 시설로 하고 숲속의 집 등 그 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최소한의 산림치유시설을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숲 인근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임.
- 나. 거창군에서는 2013년 4월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를 가조면 수월리 일대로 선정하고 투융자 심사와 사업신청을 하여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다. 대상지 선정 :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고, 방문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기존의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군유지가 다수 포함된 지역을 선정하였음.

사업개요

- (1)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9번지 외 1필지
- (2) 면 적 : 50ha
- (3) 사 업 비 : 4,800백만원
- (4) 사업내용 : 치유의 숲, 숲 치유센터, 산림욕장, 숲길, 건강증진센터 등

라. 필요성

- (1)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며, 지속가능하도록 종합적 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이 필요
- (2) 한편 거창군은 지리적으로 남부내륙의 중심지이며, 덕유산과 백두

대간에 위치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

다. 검토결과 : 위와 같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을 조성 하도록 사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시설물 건립을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여 운영해야 함.

※ 주요 사업내용

| 구 분 | 사 업 량 | 사업내용 | 비고 |
|------------------|---------------|--|----|
| 건강증진센터 (치유센터) | 1개소 | - 치유센터 및 방문자센터 등 - 치유의 숲 정보제공, 교육, 상담 - 건강체크 등 | |
| 피톤치드 체험장조성 | 2개소 (3ha) | - 잣나무 산책로, 낙엽송 산책로 - 체험숲 조성, 한약초 재배지 - 아토피 치료 강의 | |
| 물치유시설 | 1개소 | - 발담그기, 팔담그기 - 숲속에서 물이 주는 심신의 치유 효과 활용 건강유지 | |
| 오감 연결길 | 1개소 | - 이용객 건강상태에 따라 경사도 길이 고려하여 길 조성 | |
| 산림욕장 | 1개소 | - 산림내 휴식 테크 시설 | |
| 건강 명상숲 | 1개소 (10ha) | - 삼림욕, 경관림감상, 숲가꾸기 - 약초채취 및 청소년 학습 등 | |
| 주차장 | 1개소 | - 주차시설 | |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부지 매입)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안이유

- 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이후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 나.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민 쉼터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취득재산 현황

| 구분 | 재산종별 | 재산의 표시 | | | 기준가격 | 취득시기 | 취득사유 | 재산소유자 |
|------|------|----------------------|---------------------|-------|-----------|-----------|--------------------|---------------|
|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 | | |
| 매매취득 | 토지 | 거창읍 상림리 229번지 등 43필지 | 대지, 전, 답, 주차장, 창고 등 | 3,632 | 1,087,181 | 2014~2016 | 도심지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사업 | 양영숙 외 1인 등 다수 |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4조, 제45조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가. 도시계획 시설이나 각종 공공시설 시행 이후 시가지에 남아있
는 자투리땅은 방치되어 효용가치가 상실될 우려가 있음.
- 나. 이에 따라 자투리땅을 거창군에서 매입하여 소공원 등 녹지공간으
로 활용하면 주민의 쉼터로써 기대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 소
유자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함으로 해당되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음.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개정이유

- 가.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나.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 이유임.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제13조 사용료 반환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부 또는 80%로 구체화하였음.
- 나. 그 밖에 읍·면복지회관의 설치규모, 사용료 수가, 사용허가,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위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0. 22. ~ 11. 11.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조례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서 복지회관은 행정재산 임으로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삭제하고, 반환금액을 전부 또는 80%로 구체화하였음.

-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부
-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전부
- (3)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
- (4) 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

- (1) 복지회관의 설치규모 :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련 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을 할 때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삭제하였음.
- (2) 사용료 수가 : 조례 제23조에서 준용규정이 있으므로 중복되어 삭제하였음.
- (3)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된 내용임으로 삭제하였음.
- (4) 읍·면개발자문위원회 : 운영되지 않는 기구임으로 읍·면장으로 변경
- (5) 위탁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하였음.
- (6) 지도감독 :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음.

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중복되는 조항이나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정비 하는 내용임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개정이유

- 가. 200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나.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 이유임.

3. 주요골자

- 가. 조례 제8조 사용료 반환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전액 또는 10/100 등 구체화하였음.
- 나.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명칭 변경, 위탁에 대한 중복된 내용 삭제 등을 정비하였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 「노인복지법」 제3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0. 22. ~ 11. 1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조례 제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화하였음.

-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삶의 쉽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삶의 쉽터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삶의 쉽터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등 : 전액반환
- (2) 삶의 쉽터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 (3) 사용개시 이후 삶의 쉽터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 (4) 삶의 쉽터 사용 중 사용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사항

- (1) 거창군 노인복지회관 명칭 : 「노인복지법」에 따라 거창군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함.
- (2) 위탁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문장을 간소화 하였음.

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쉽터 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4항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밖에 중복되는 조항이나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삭제 또는 정비 하는 내용임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
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7]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8.3, 일부개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1.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5>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 「노인복지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66호, 2013.8.13, 일부개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 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6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 ~ ② (생략)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3.10, 2008.9.10, 2009.2.3,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거창군 삶의 쉼터 민간위탁 동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안이유

- 가. 노인, 여성, 장애인 통합복지시설인 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기간 만료
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복지시설인 쉼터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 삶의 쉼터의 운영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거창군 삶의 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안로 1266-41(송정리 941-1)
- 다. 규 모 : 대지 15,057m² / 건축면적 2,206.3m², 연면적 5,508.99m²
- 노인·여성복지관 : 3,009.31m², 장애인복지관 2,499.68m²
- 라. 사업내용 : 거창군 삶의 쉼터 운영
- 마. 위탁대상 사무
 - (1) 시설 : 거창군 삶의 쉼터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 (2) 운영 : 노인과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바.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5년

- 사. 수탁자격 : 경상남도 내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아.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자. 소요예산 : 예산범위에서 시설 종사자 임금 및 시설운영비 지원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 21조의2
- 나.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다.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조례」 제6조

5

검토의견

- 가. 거창군 삶의 쉼터는 2005.10.11. 착공하여 2008.1.9. 준공되었고 이어서 2008.6.26. 개관이 되었으며 최초위탁은 2008.2.19.~2011. 2.18. 3년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였음. 그 후 위탁기간 만료로 2011.2.19.~2014.2.18. 3년간 위 단체에 재 위탁하여 왔음.
- 나. 수탁자 선정 방법은 수탁법인의 공개모집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하는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특히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여부를 판단해야 함.
- 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거창군 삶의 쉼터는 노인, 여성,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시설로써 전문적 사업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노인, 여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음.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2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5.

2 제안이유

- 가.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전문성활용, 탄력적인 사무처리,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장점으로 하고 있으며,
- 나.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개인의 운영방법을 개선한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거창군 공립(동동)어린이집을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현황

|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면적(m ²) | 정원 | 현원 | 보육직원 | 비고 |
|----|--------|---------------|---------------------|----|----|------|----|
| 위탁 | 동동어린이집 | 거창읍 중앙로 2길 19 | 568 | 47 | 45 | 6 | |

- 나. 위탁기간 : 5년, 위탁기간 만료 시는 운영 실적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 가능
- 다. 수탁자격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라. 선정방법 : 공개모집,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군수 결정

다. 시설운영비 지원 : 예산범위에서 보육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4 관련법규와 조례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 다.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라.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제8조

5 검토의견

- 가. 동동 어린이집은 2011.3.5.~2014.3.4.(최초)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변경 위탁 여부를 결정코자 함.
- 나.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목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에 있음.

※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

| 구분 | 직 영 | 위 탁 |
|-----|--|--|
| 장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경쟁을 통한 교사 채용으로 전문성 및 임용의 객관성 확보 ◆ 신분 보장으로 안정적 근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이 강한 시설장에게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가능 ◆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 |
| 단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 안정으로 창의력 및 경쟁력 약화 ◆ 행정의 지나친 관여로 효율성 저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채용권이 시설장에게 있어 교사 채용의 객관성 확보 미흡 ◆ 장기 위탁 시 시설 부실운영 우려 |
| 차이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 임면 - 직영시설 : 군수가 임명/ 후 보고 - 위탁시설 :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명 | |

다. 동동 어린이집의 여건이나 관련된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함이 타당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동동어린이집이 현재까지 위

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왔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어린이
집의 운영방식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필요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검토함.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법」이 2013.12.12일자로 개정 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변경하고
- 나.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을 현원 운영에 맞게 별표기준을 변경함.

3. 주요골자

- 가. 기능직과 계약직의 폐지 및 일반직 등으로의 통합(안 제2조 및 부칙 제4조 등)
 - 1)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
 - 2)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 및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함.
- 나. 조례개정 주요내용
 -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
 -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하였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상위법령 단순집행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1) 별정직·정무직 비율 : 별정직 가운데 보건진료원 15명이 2012년 12월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현재는 별정직 1명, 정무직 1명뿐이므로 그 비율을 1% 이내로 하고,

(2) 일반직을 99% 이내로 함.

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 비율 : 현원 직급별 숫자가 최고 상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당초와 같이 변동 없음

(2) 기능직 공무원 비율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삭제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변동 없음

(4) 별정직 공무원 : 현원 1명의 급수에 맞게 7급 상당을 없애고 6급 상당을 100%로 변경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1) 기능직 50명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모두 삭제

(2) 일반직 6급이하 536명에 50명을 합하여 586명으로 변경

라.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려는 목적으로

2013.12.12일자로 개정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3.12.12]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일부개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법률 제11531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생략)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이 법 시행 후 제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및 근무형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 계약에 따른다.

(이하생략)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개정이유

- 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 사무를 재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 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담당부서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를 창조정책과에서 이관
- 나.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인수
 - (1) 인구증가 종합계획수립 추진
 - (2)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추진
 - (3) 사이버 거창군민 만들기 홈페이지 운영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합의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상위법령 단순집행사항으로 입법예고 생략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가. 이 조례의 개정은 인구증가 정책 추진에 관하여 그 동안 창조정책과에서 담당을 해 왔으나 한시적 업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 나. 여러 가지 긍정시책과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 다. 특히, 창조정책과의 부서 성격인 새로운 시책추진, 발굴 등의 성격과 다르고 다른 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등과 비교하여 현재 창조정책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담당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2.7.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22]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9.21, 타법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강창남, 조기원, 이성복, 백범영,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정이유

- 가.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거창군에서 발생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 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예회복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사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에 대한 규정.
- 나.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
 -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1. 15. ~ 1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1945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써 보도연맹을 비롯한 국지적인 희생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게 되었음.

※ 우리 군에는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거창사건인데 이미 사법부의 확정판결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법 제2조제2항

나. 이에 따라 (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거창지역유족회가 구성되고 대상자들이 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진실규명을 받았음.

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국가의 의무로써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

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 법 제34조

피해 및 명예회복에서도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법 제36조

라.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 국가에서 「과거사 연구재단」을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 관리,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하도록 정하였으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재정 부담과 집단민원의 이유로 설립되지 않고 있음.

마.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회가 원고가 되고 국가가 피고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다행스럽게도 매년 군비를 지원하여 위령제를 지내는 등 거창군 차원에서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

(1) 「제63주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 위령제 · 추모식」

가. 일시 : 2013. 4. 10(수) 10:30

나. 장소 : 거창읍 대동리 포교당 심우사

다. 참석 : 유족회원 등 300여명

라. 주관 : 한국전쟁전 · 후거창지역민간인학살희생자유족회

마. 예산 : 5,800천원(국 1,500 군 4,000 자 300천원)

(2)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진사업 : 유해매장지 발굴사업, 호적정리사업, 위령제 국비보조사업, 홈페이지와 군지 등에 왜곡된 사실 바로 알리기 사업 등

(3) 안전행정부 : 「이행관리단」을 신설하여 명예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또는 관리하고 있음.

바. 이번 조례 제정은 관련법의 위임규정은 없지만 그 동안 군에서 지원해 온 위령제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더욱 폭 넓은 분야의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당사자와 유족을 위하여 현실적인 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성격상 기관위임사무는 제외하고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한국전쟁과 6.25전쟁의 명칭문제 :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음.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 : 6.25사변일

제7차 교육과정 기준 : 6.25전쟁

외국 사람들이 지칭할 때 : 한국전쟁

※ 창원시에서 같은 조례를 2013.9.30. 제정운영하고 있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

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조기원, 조선제, 이성복, 이해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개정이유

- 가. 이 조례는 국가명승 제53호로 지정된 수승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무료입장하게 함으로써 거창을 널리 홍보하고 이용객이 부담 없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고
- 나. 특히 국제연극제 기간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불필요한 사용 용어 삭제
- 나. 관람료 징수기준, 징수방법, 징수면제 대상 등 삭제
- 다. 그 밖에 별표와 별지의 관람료와 관련된 것을 삭제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1. 19. ~ 11.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관람료 징수 현황

| 구분 | 이용객(명) | | 수입금액(천원) | | 증가율(%) | |
|-----|--------|--------|----------|--------|--------|------|
| | 2012 | 2013 | 2012 | 2013 | 이용객 | 수입금액 |
| 입장료 | 53,280 | 64,145 | 50,139 | 59,454 | 20.3 | 18.5 |

나. 관람료 폐지의 단점 : 관람료가 폐지되면 거창군 세수가 감소하고, 매표소에서 입장객의 적정인원 통제가 어려우며, 이용객이 증가하여 수송대 시설 관리의 부담이 가중 됨

나. 관람료 폐지의 장점 : 방문객들이 이미 관람료 징수를 폐지한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불만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고 7~8월 성수기에 방문객의 출입이 용이하여 은하리 마을은 물론 수송대 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람료 징수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음.

다. 따라서 관람료 폐지로 인하여 교부세 산정 등 거창군 세입예산에는 미치는 영향보다 인근지역을 경유하는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수송대를 둘러 볼 수 있도록 하고 국제연극제 관람객을 비롯한 피서객들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함으로 세수감소 측면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함.

다만, 엄격한 세수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출입 자동화 시스템, 주차장시설, CC TV 등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함.

라. 이와 같이 이번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고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11. 18.
- 나. 제 출 자 : 조기원, 이성복, 이애숙 의원
- 다. 회부일자 : 2013. 11. 20.

2. 제정이유

- 가.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거창군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음
- 나. 아울러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나.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라.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 증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3. 11. 19. ~ 11. 2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건강도시의 개념 :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함.(세계보건기구,2004)

나. 건강도시 조례 제정 현황 : 창원시(2011. 7. 29), 진주시(2008. 1. 10), 양산시(2011. 11. 11), 남해군(2007. 11. 9), 하동군(2010. 5. 19) 등 경남 5개 시군

다. 입법예고 결과 반영 : 거창군의 의견 중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을 추가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은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시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반영.

다. 건강도시 조례의 범위가 보건 분야 뿐 아니라 환경, 산림, 경제체육분야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건강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적절함.

라. 그리고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상위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6. 관련법령

□ 국민건강 증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4조의3(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3.26>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6.9.27]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5조의3(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9.27]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7조(광고의 금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 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5.27>
- ⑦ 삭제 <2011.6.7>
-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 ② 제조자들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들이 한 광고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 ④ 제조자들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3(국가시험) ①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

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9.29]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2010.1.18>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국민영양조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강건강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0조(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제21조(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